

## 교육감 규정

### 교육감 규정 A-832

학생 대 학생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

직원 대 학생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서 참고

### 교육감 규정 A-830

불법적인 차별/괴롭힘에 대한 내부적인 이의제기 접수

### 교육감 규정 A-420

학생 품행 및 징계-체벌

### 교육감 규정 A-421 언어 폭력

### 보고 한 후에 어떻게 진행됩니다?

집단 따돌림, 괴롭힘, 차별 또는 협박에 대한 모든 보고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교육감 규정 A-443에 따라, 만약 학생이 규율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적절한 징계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만약 부적절한 품행이 위법적인 행위라면, 경찰에게 연락하게 될 것입니다.

### 학생 지원

적절하다면, 개별 또는 단체 상담, 외부 기관으로의 추천 및/또는 다른 중재 조치가 제공될 것입니다.



Bill de Blasio

시장

Carmen Fariña

교육감

괴롭힘이나 차별을 보고한 사람 또는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보복은 금지됩니다. 이런 문제로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즉시 학교 관리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다음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spectForAll@schools.nyc.gov](mailto:RespectForAll@schools.nyc.gov)

UFT BRAVE 핫라인 212-709-3222

월요일-금요일 2:30 p.m.부터 9:30 p.m.까지

**비밀 보장:** 모든 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것이 뉴욕시 공립학교의 정책이며 이 정책에 따라 이의 제기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이의 제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나누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제기에 대한 정보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상황을 알아야 할 개인에게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

# 모든 사람 존중하기:

뉴욕시 공립학교를  
안전한 곳, 모든 학생  
을 지원하는 곳으로  
만들어 갑시다



# 뉴욕시 공립학교의 모든 사람 존중하기

뉴욕시 공립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은 우리 뉴욕시의 문화적 다양성과 존중에 기여하는 바가 큼니다.

교육청은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 및 실질적 또는 추절적 인종, 피부색, 시민권/이민 상태, 종교, 신념, 출신 국가, 장애,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성별 표현, 성적 지향 또는 몸무게에 따른 차별이 없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유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존중:** 사람에게 대한 존경이나 사람을 가치있거나 훌륭하게 여기는 마음; 적절한 수용 또는 이해; 타인의 성격에 대한 존중; 인정; 존경 또는 경의를 표하는 상태; 다른 사람을 고려하거나 생각함을 보임.

이 정책은 학생들이 다른 학생 및 직원이 학생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습니다.

이런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은 학교, 학교 운영 시간, 방과 전 또는 후, 교내, 학교 지원 이벤트 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 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동이 교육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해 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거나 학교 커뮤니티의 건강, 안전, 도덕성 또는 안녕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때 학교 외의 장소에서도 금지될 것입니다.

교육감 규정서 및 규율 규정의 사본은 학교장실 및 온라인 <http://schools.nyc.gov/default.aspx> 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지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차별에 기반한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은 다양한 형태를 띠 수 있으며 육체, 언어, 글쓰기 등으로 표현 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 괴롭힘은 신체적 상처 또는 상처를 입히겠다는 협박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괴롭힘은 친구 사이의 거절 또는 배제에서 개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고립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적** 괴롭힘은 욕을 하며 놀리기, 비웃기 또는 모욕하기 등을 의미합니다. **서면으로**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전자 커뮤니케이션 (인터넷-왕 따)이 포함됩니다: 인터넷, 핸드폰, 이메일, 개별 디지털 지원기기, 소셜 미디어, 블로그, 대화 방 및 게임 시스템.

다음과 같은 예가 포함됩니다:

- 신체적 폭력; 스토킹;
-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언어적 또는 신체적 협박;
-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학생 또는 직원에게 강요 또는 조 정하고자 함; 신고식;
- 비웃기; 굴욕을 느끼거나 소외를 목적으로 또래 그룹에서 제외시키는 행동;
-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모욕적인 농담 또는 모욕 적이거나 괴롭게 욕하기;
- 모욕적인 말을하거나 학생의 인종, 피부색, 민족, 종교, 신념, 출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표현, 성적 지향, 시민권/이민 상태, 몸무게 또는 장애에 따른 호전적인 행동;
- 게시, 돌려보거나 또는 서면 또는 인쇄된 의상이나 인터넷에 게시된 (인터넷 왕 따) 타인에 대한 모욕적인 의견이나 스테레오타임을 포함한 낙서와 같은 서면 또는 그래픽 자료; 개인의 인종, 피부색, 민족, 종교, 신념, 출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표현, 성적 지향, 시민권/이민 상태, 몸무게 또는 장애에 기반한 이런 행동을 취한 경우.

만약 본인이 다른 학생 또는 직원으로부터 괴롭힘, 집단 따돌림 또는 차별을 받았다고 믿거나 또는 이런 행동을 목격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학생 또는 직원으로부터 괴롭힘, 집단 괴롭힘 또는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및 이런 행동에 대해 인지한 모든 학생들은 이런 행동을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 **다른 학생으로** 부터 집단 따돌림, 협박, 차별 또는 괴롭힘을 받은 학생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학교의 **모든 타인 존중** 포스터에 기재된 학교 교직원이나 기타 모든 학교 직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교직원 대 학생**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에 대해 학교장/담당자 또는 특별 조사 담당실(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은 인종, 피부색, 민족, 종교, 신념, 출신 국가, 성별, 성 정체성, 성적 표현, 성적 지향, 시민권/이민 상태, 몸무게 또는 장애에 기반한 **교직원의 학생 차별**을 학교장/담당자 또는 평등한 기회 담당실 (Office of Equal Opportunity)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행위가 효율적으로 조사 및 다루어질 수 있도록 사건이 발생 한 후 가능한 빨리 보고하여야 합니다.
- 직원은 반드시 이런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중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교의 다양한 장소에 게시되어 있는 모든 타인 존중 포스터를 참고하여 학생 대 학생 괴롭힘, 집단 따돌림 또는 차별 문제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